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21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용어를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규칙으로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대상자의 지원중단·환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대상자 용어를 명확히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 - 당초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
 - 변경 :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
- 보험료 지급대상자의 지원중단·환수규정을 조례로 규정(안 제9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, 「의료급여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상위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'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' 에서 '의료급여법 상의 수급권자가 아닌자로'로 변경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,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